

함양군 공고 제2019 - 1154호

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

「산림보호법」 제7조 및 제8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10. 30.

함 양 군



1. 공고기간: 2019. 10. 30. ~ 2019. 11. 28. (30일)
2. 산림보호구역 종류: 수원함양보호구역(제1종)
3.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: 붙임 내역서 참조
4. 산림보호구역 지정 사유: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1호에 의거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써 하류의 농업용수, 발전용수, 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
※ 상세내용 붙임 내역서 참조
5. 산림보호구역 지정 연월일: 별도 지정 고시일
6. 이의신청
가. 기간: 2019. 10. 30. ~ 2019. 11. 28. (30일)
나. 접수처: 함양군청 산림녹지과(☎ 055-960-4309)

※ 본 공고에 이의가 있으신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 산림녹지과(☎ 055-960-4309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이의신청 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(구두)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고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서 1부.
2. 이의 신청서 1부. 끝.